



[축산법령]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적정공급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신고, 농업기계별·규격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산정 및 면세유류 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기계) ①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이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1호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콩나물재배업자는 제외한다.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②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1의 농업기계로서 신고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다만, 농업용난방기는 육묘(배양·증식을 포함한다), 채소(새싹채소를 포함한다),

화훼, 과수, 버섯을 재배하는 온실용(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소, 돼지, 닭, 오리, 누에, 관상조류 등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 사육용에 한하며, 잔디깎는 기계는 잔디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농업기계의 신고 등) ①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 조합·조합·단체 등(이하 “농가 등”이라 한다.)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포함한다.)가 소재한 지역의 조합에 국세청장의 고시에 따라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가 등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한 조합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매 **출수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가 등이 재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가 등이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재신고하지 못할 경우 면세유류를 관리하는 조합장은 현지조사 또는 리·통장의 확인 등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수 있다.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면세유류를 관리하는

조합은 해당 기간 안에 재신고가 되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연간공급기준량 및 조합별 한도량 배정) ①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은 별표2의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3의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50%범위 안에서 추가할 수 있다.
 2. 윤활유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준량의 5%이내로 한다. 다만, 농용트랙터는 3%이내로 한다.
-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의 농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 농기계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농업용 면세 석유류 제품별 소요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출한 농업용 면세 석유류의 소요량을 검토하여 석유제품별 연간 소요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신청한 석유제품별 소요량을 감안하여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 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의 범위내에서 조합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배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이 때, 조합별로 영농형태의 특성에 따른 석유제품별 수요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배정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⑦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면세유류를 관리하는

조합은 원활한 농업용 면세유류의 관리를 위하여 일정 물량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농기계별 배정 등) ① 조합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농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 별표4의 농업기계별 작업가능 조건표와 영농규모, 재배작목 등을 참고하여 석유제품별·월별 공급한도량을 농가 등에 배정한다.

- ② 난방용 면세유의 경우 재배작목·면적·사육규모 등의 수요를 감안하여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조건표 범위내에서 배정하며, 농업용난방기 조건표에 표기되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유사작물을 준용(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하고 조건표에 표기되지 않은 가축 등에 대해서는 농가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사용 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유류사용 사육이 인정될 경우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별표8)
- ③ 조합장은 농업인 등의 면세유 추가 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별표9의 작목별 영농면적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여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조합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별 공급기준량을 초과할 경우는 추가공급사유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읍·면·동장은「통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량조사(폐농기계를 포함한다)를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조합장에게 12월 20일까지 통보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조합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농기계 보유현황 자료, 동절기 농업용 난방기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 ⑥ 조합장은 한해대책 및 가축질병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기계용 면세유의 경우 읍·면·동장 등의

확인을 거쳐 마을대표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조합장, 조합공동사업 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농업용난방기는 제외)를 농업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농업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장은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⑧ 농가 등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량이 있을 경우 일정 시점을 정하여 조합의 유보량으로 회수하여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전배할 수 있다. 다만, 배정량이 회수된 농가 등이 당초 배정량의 범위에서 재배정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 없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⑨ 농업기계를 임차한 농가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사용) ① 농업용 면세유류는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으며, 면세유류카드 등에 배정된 농업용 면세유류의 연간 배정량은 당해연도 1.1일부터 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②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은 해당 조합 또는 농장 등이 소재하는 시·군 관내의 지정된 석유판매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이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시·군의 인접 시·군까지로 카드 사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단, 중유 및 가스 구입시는 인접지역을 벗어난 석유판매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

드의 발급·관리 등에 따른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여 농업용 면세유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유류관리기관 등에 대한 조사·단속·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업인, 석유판매사업자, 면세유류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년4회 이상 면세유류의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조합 또는 농가 등을 선정하여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점검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조합 또는 농가를 달리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 적발시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시행하여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류 사용량이 직전년도에 연간 1만리터(ℓ)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비치하고 점검자 요구시 제출하는 등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합장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등의 신고내용이 맞는지 점검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에는 1회이상 농업용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

특례규정 및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농업
기계용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
323호, 2009년 9월 15일)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키한) 이 고시는 2012년 9월 30일 이전
에 재검토히는다.

별표6

축산용 용량조건표

1. 양계

구분	계사 형태	공 급 량 (2/회)							
		5,000수	10,000수	15,000수	20,000수	25,000수	30,000수	35,000수	40,000수
강원	무창	740	1,480	2,220	2,960	3,700	4,440	5,180	5,920
	개방	860	1,720	2,580	3,440	4,300	5,160	6,020	6,880
중부	무창	580	1,160	1,740	2,320	2,900	3,480	4,060	4,640
	개방	650	1,300	1,950	2,600	3,250	3,900	4,550	5,200
남부	무창	450	900	1,350	1,800	2,250	2,700	3,150	3,600
	개방	490	980	1,470	1,960	2,450	2,940	3,430	3,920
제주	무창	310	620	930	1,240	1,550	1,860	2,170	2,480
	개방	350	700	1,050	1,400	1,750	2,100	2,450	2,800

주) 1. 양계농가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신청시 입추수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 출하한 후에는 출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등을
지역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연 6회이상 사육시는 지역조합에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음.

2. 오리는 단위 면적당 사육마리수, 내한성 등을 감안 양계 대비 2배 공급량 산정

3. 사육마리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간법으로 산출하여 공급량 산정

